

『醫方類聚』의 編纂과 朝鮮前期 醫書

안 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 Mutual Reaction Between The Compilatory Course of 『Euibangyoochui』 and Other Medical Books in First Term of Chosun

Ahn Sang-Woo

The book, 『Euibangyoochui醫方類聚』(A.D. 1445) is called the treasure-house of the knowledge of medical science, due to the 50,000 prescriptions and an enormous amount of medical information that it contains. Bu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is book, a convenient and efficient method to use the information in this book isn't developed yet and as a result the use of this book in a low state. Therefore before than anything else, there is necessity to establish the database on 『Euibangyoochui』.

Before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on 『Euibangyoochui』, there are basic works that should be preceded as follows; like the correction through investigating and comparing between the texts that are related with 『Euibangyoochui』, interpretation, proofread and translation to Korean of the original. And also bibliographical research on 『Euibangyoochui』.

The compilatory course and transmissional system of the medical books in first term of Chosun(朝鮮) was able to apprehend through the bibliographical research about 『Euibangyoochui』. Also, many emergency medical books and books about the preven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mostly based on 『Euibangyoochui』 were wrote and put to practical use. And this fact, tells us that the compilation of 『Euibangyoochui』 wa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Chosun as means to accumulate the medical knowledge.

* 기 발표논문의 보완편임.

『醫方類聚』는 세종 때(1445년) 1차 완성된 후 성종 조에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방서이다. 당초 365권에 이르는 규모가 세조대 재편 과정 시 100여 권이 줄었지만 현재 전해지는 양만해도 260여 권에 달하는 巨帙이다.¹⁾ 이 책에는 200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 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 당, 송, 원, 명대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 초기까지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어 당시 최고 수준의 의학이 집대성된 의서이다.

그러나 성종대 초간 당시에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30여 질밖에 인출하지 못하였고 중간된 일도 없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현재 전하고 있는 의방유취 원본은 선조대 전쟁 중 약탈당한 1질이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²⁾ 국내에서는 1997년 발견된 단 한 권이 보물 1234호로 지정되었을 뿐이다.³⁾ 『의방유취』는 대략 18세기 후반인 정조대 이후에는 의서에 거의 인용되지 않았거나 인용되었더라도 『東醫寶鑑』을 통한 재인용에 불과하여, 이 시기 이후로는 국내에 원본이나 관련 자료가 이미 거의 인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의보감 이후 조선 후기 한의학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거의 잊혀졌던 『의방유취』는 근세 일본 多紀家の 보존 장서를 喜多村直寬이 복간한 聚珍版 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한정된 수량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여 한, 중, 일 등에 남아 있는 몇 부조차도 貴重本으로 분류된 형편이다. 1965년 취진판을 대본으로 필사 영인 작업⁴⁾이 이루어졌고, 80년대 이후 중국 교점본의 다량 인출⁵⁾ 및 북한에서의 국역본 발간 등으로 점차 동양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⁶⁾

그간 일본에서 이루어진 失傳醫書의 採輯復刊, 중국의 원문 校點, 북한의 국역

1) 일본 宮内廳 書陵部 圖書寮 소장 의방유취는 총266책 중 14책(63, 98, 116, 120, 132, 148, 149, 154-156, 189, 207, 209, 220)이 결손된 상태로 현재 252책이 보관되어 있다. 이중 일부가 日人 澁江道純에 의해 취진본 간행시 보궐되었으나 154-156, 209, 220책은 결궐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 현전본 중에서도 다수 缺落處가 있으며, 중간본에서는 보궐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의방유취가 일본에 전해진 사실은 丹波元堅의 『時還讀我書』에 전한다. “이 책(의방유취)은 加藤清正이 노략질해서 가져온 것인데, 仙台의 의사 工藤平助의 집안에 간직했었다. 先教諭(丹波元簡)께서 많은 돈을 주고 사들여 매우 귀중한 보배처럼 여겼다. 참으로 牢觀의 秘帙이며, 대단히 유용한 鉅觀이다.” 加藤清正이 조선에서 의방유취 263권을 가져간 것은 1598년(宣祖 31년, 일본 慶長3년)으로 전해진다.(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自然社, 1979, p.99.)

3) 원서 권201(한독의약사료관 소장)

4) 동양의대 필사본과 이를 대본으로 한 대만의 영인판.

5) 10,500부 인출.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1.)

6) 이상 줄고. 「의방유취 총론의 체제와 인용방식 분석」, 1998.

작업이 수행되었지만 체계적인 연구성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조차 몇몇 한국 의학 通史類로 분류되는 서적들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⁷⁾, 해제나 단편적인 소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의방유취 養性門에 대한 연구⁸⁾가 발표된 바 있지만, 현존 원본에 缺失이 많은 부분이어서 의방유취의 면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인하여 의방유취가 중국 의서의 편제를 그대로 모방한 사전식 분류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학계에서는 그 중요성을 결코 낮춰 보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취진관 복간을 전후로 『耆婆五藏論』, 『傷寒括要詩』, 『川玉集』 등 전하지 않는 여러 종의 의서가 의방유취에서 채록되어, 일본의 고증의학과 들에 의해 만들어진 『醫方類聚採輯本』에 복원된 고의서만 해도 30여 종에 이른다.⁹⁾ 중국에서도 『의방유취』의 교점본 발행(1981년)을 계기로 이 서적을 자국에서 전해지지 않는 의서의 복원과 교감·정리 작업에 주요 校本으로 이용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증학의 입장에서 주로 인용서-중국 고대 의서-들을 발췌하여 복원작업에만 이용했을 뿐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의서의 교감작업에 사용하거나 교류사 측면에서만 논급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중국에서 간행된 교점본 『의방유취』는 원문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刪削, 변형시킨 부분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11), 12)}

이제 국내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대량의 중국 의서가 인용됨으로써 갖게 되기 쉬운 피상적인 기존 관념 즉, 선대의 여러 의서를 모아놓았을 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학계에서도 『의방유취』의 편찬을 즈음하여 『황제내경』, 『난경』, 『상한론』 등 의경이론이 결부된 金元醫學의 도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곧 조선전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고유의학 전통(鄉藥)과 금원의학을 결합하여 경험적 의학지식이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당송시대 경험방 위주의 임상의학 수준을 탈피하게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¹³⁾

7) 金斗鐘, 金信根 등의 연구.

8) 姜世求. 「의방유취의 양성문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6.

9) 三木榮. 『朝鮮醫書誌』大坂: 學術圖書刊行會, 1973(增修版). pp.46-48, 348-352.

10) 盛增秀, 「從校點醫方類聚說起」, 上海中醫藥雜誌, 1984/6, pp.34-35.

11) 위의 논문, p.35.

12)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醫方類聚』(校點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校點說明

13) 朴贊國. 「東醫學의 성립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1(5), pp.137-150.

이에 저자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의학의 전승, 발전과정과 신진의학설의 수용과정을 파악하고자 먼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본 史書와 서지 목록 및 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의방유취』의 편찬과정과 이와 연계된 조선전기 관찬 의서의 간행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⁴⁾ 한국한의학사에 있어서 의방유취 편찬이 갖는 의미를 파악함과 아울러 ‘조선 3대 의서’로 불리는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학의 독자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의방유취의 편찬과정

1.1. 世宗朝 草稿本 醫方類聚

『의방유취』는 세종 임금의 재위 중인 1445년 의관뿐만 아니라 집현전학사를 비롯한 문신들이 대거 참여하여 365권이라는 巨帙로 편찬된 동양 최대의 한의방서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의방유취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며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곧 놀라게 된다. 바꿔 말해서 의방유취는 당대 중국 의서를 망라해 놓은 의학 백과전서이라는 식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의방유취의 편찬 사실을 전해주는 최초의 기록이자 일반적인 인식의 범주를 한정짓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종실록의 기사이다.

* 세종27년(1445년) 10월 27일 :

集賢殿 副校理 金禮蒙, 著作郎 柳誠源, 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門을 나누고 각 門에 해당하는 類를 모아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直提學 金汶·辛碩祖, 副校理 李芮, 承文院 校理 金守溫에게 명하여 醫官 全循義·崔閔·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安平大君 李瑬과 都承旨 李思哲, 右副承旨 李師純, 僉知中樞院事 盧仲(重)禮로 하여금 監修하게 하여 3년에 걸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65권이였다. 이름을 『醫方類聚』라고 하사하였다.¹⁵⁾

14) 안상우 외.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참조하여 수정 보완.

15) 『世宗實錄』(17) 「第11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1/6:310. (“戊辰……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郎柳誠源·司直閔普和等, 哀集諸方, 分門類聚, 合爲一書. 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 聚醫官全循義·崔閔·金有智等, 編集之. 令安平大君瑬·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重)禮之, 歷三歲而成, 凡三

의외로 이 기록은 편찬의 시작이 아니라 완결을 알리는 종료시점의 기사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의방유취가 등장하는 실록의 기사는 이것이 시작이자 출발점이다. 이 기록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드리우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간행목적이 확연치 않다. 완성시점에서 편찬기간 3년을 제하고 역산하면 늦어도 1443년에는 편찬에 착수했다는 말이 되는데, 85권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의 향약집성방이 간행된 지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¹⁶⁾ 무엇 때문에 그것도 같은 임금의 재위기간 동안 연거푸 이같이 방대한 의서의 편찬을 서둘러야 했으며 완성 후에도 즉시 간행되지 못했던 것일까?

* 文宗1년(1451년) 10월 9일 :

李季甸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醫方類聚』와 『兵要』를 베껴 쓴 사람에게 모두 特旨로 散官의 직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는 산관직을 제수하지 말라.” 하였다.¹⁷⁾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실록의 기사에서 유취가 정식 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초고의 편찬이 완료된 지 만 6년이 흐른 시점이라는 사실과 세조의 등극 후 교정이 재개된 상황을 감안하면 역시 1445년 초판본이 완전하지 못했으며 간행되지 못한 것이 분명해진다.

* 세종29년(1447) 7월 1일:

諺文廳 및 醫方을 撰集하고 書寫한 別侍衛, 忠順衛, 內直院, 司尊院은 書札에 공로가 있으므로 別到¹⁸⁾를 주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각 관아의 이진으로서 이러한 자에게는 別仕를 주는 것이 전례이다……(의론이 같지 않아) 내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¹⁹⁾

百六十五卷, 賜名曰『醫方類聚』.”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10, 77.)

16) 향약집성방은 세종15년(1433)에 간행되었으며, 權探의 序文과 세종실록 권60의 간행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7) 『文宗實錄』(3) 「第1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219-223. (“甲戌……(李)季甸啓曰: ‘前此『醫方類聚』及『兵要』書寫者, 皆以特旨加散官職.’ 上曰: ‘此人等勿除散官職.’ ……” : 『文宗恭順大王實錄』 「卷10, 51)

18) 別到: 元仕(정규 근무일수)외에 특수한 업무나 임시 작업을 위해 특근하는 근무일수(仕數)를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 別仕(『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 『世宗實錄』(18) 「第1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262-263. (“辛卯……諺文廳及醫方撰集書寫別侍衛·忠順衛·內直·司尊院有勞於書札, 欲給別到, 何如?’ 各司吏典之如此者, 其給別仕, 例也……上曰: ‘予當更議施行.’”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 117, 63)

* 세종29년(1447) 9월 7일:

처음에 醫書撰集官에게 한 資級을 더하도록 명하였을 때 副司正 任元濬이 역시 그 예에 들었었는데, 都承旨 黃守身이 평소 원준과 친함을 생각하여 마음대로 東班에 옮기고 守²⁰⁾七品職을 주었더니, 司憲府에서 그 일을 적발하여, …… 義禁府에 내리어 鞫問하게 하였는데, 명하여 수신과 원준의 告身²¹⁾을 빼앗고 나머지는 勿論하게 하였다.²²⁾

문종조 기사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위의 두 기록은 세종조 초편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조조 교정시에 드러난 교정상의 문제 이전에 의방유취를 비롯한 의서 편찬과 서사인원에 대한 논공행상에 잡음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면사는 의학 외적인 상황이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세종은 재위기간 후반 10여 년을 세자인 문종으로 하여금 정사를 돌보게 하고 뒷전에 물러앉아 있었다. 따라서 의방유취 초편본의 시작과 완성시점(1433-1445)은 모두 실제로는 문종의 치세기간에 속한다.²³⁾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방대한 국가 사업이 세종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세종의 유업을 승계한 문종 임금의 섭정 하에서 의방유취의 실지 편찬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세종 초편본은 집현전 학사와 의관, 문신들이 대거 참여, 다량의 의방서를 분문 유취하여 최대의 한의학서를 편찬하는데는 성공했으나 撰集과 書寫의 완료 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 교정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연계된다. 이렇듯 세종 당대의 초편본은 우여곡절 끝에 간행되지 못한

20) 이른바 行守法은 품계와 관직이 상응하지 않는 관원에게 주던 칭호로 고려 초기부터 唐宋의 관제를 본떠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에서는 세종24년(1442)부터 시행하였으며, 법제화되어 『經國大典』에 수록되었다. 즉,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으면 ‘行’(階高職卑)이라 일컫고 반대로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으면 ‘守’(階卑職高)라 칭하여 관청과 직사의 명칭 앞에 적는다.(『國史百科辭典』 참조.) 이것으로 보아 당시 임원준이 西班의 한품으로 의방유취 편찬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21) 告身 : 직첩, 사령장(『고법전용어집』, 법제처).

22) 『世宗實錄』(18) 「第1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294-295. (“丙申……初, 醫書撰集官命加一資, 副司正任元濬亦在其例. 都承旨黃守身索(素)善元濬, 擅移東班, 授守七品職. 司憲府發其事以啓下, 守身·元濬及兼判吏曹朴從愚·判書鄭麟趾·參判李審·參議申自謹·正郎姜希顔·佐郎崔悌男, 于(下)義禁府鞫之, 命奪守身·元濬告身, 從愚等勿論. ……”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17」, 70)

23) 세종19년(1437) 건강을 이유로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재결케 하고 詹事院 설치, 25년(1433) 이후 세자의 섭정, 27년(1445) 內禪을 표명하고 세자의 본격적인 섭정이 시작됨(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2)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5. p.69. 참조).

채 수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앞서 제시된 의문점 중의 하나, 즉 대형 방서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 이상의 명문화된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시에 의학 뿐만 아니라 제반 학술·어문·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국가적인 문화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분야는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 제도적인 문제에 우선할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조 5년에 제왕의 정치귀감서인 『治平要覽』에 앞서 의방유취의 교정과 인출이 먼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방유취의 편찬 자체가 신흥국가인 조선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역점사업 가운데서도 다른 것에 비해 우선되는 중점사업이었던 것이다.

또 내적으로 의학서적의 수요를 충족시킬 절대 필요량이 부족했으며, 교육 목적과 신진 의학설의 수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정보의 수집, 정리가 최우선 과제였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계속되는 의방유취의 교정 작업과 편찬 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2. 世祖朝 校正本 醫方類聚

세조의 의방유취 교정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보기로 하자. 다음 세 가지 기사로 세조가 이미 세종 연간의 초판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의 총 책임자로 양성지가 인선되고 교정작업이 직접 지시된 세조 5년 11월의 착수시점 이전에 이미 수차례 간행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조의 교정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는 梁誠之와 任元濬이 있다. 전자는 서적편찬과 관련한 「書籍十事」(1466년) 등 여러 차례의 奏議를 통해 관찬서의 간행과 도서 收藏의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서적의 교정 및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다. 또 임원준은 의술로 등용되고 세조의 신임으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인물이었으며, 그 또한 세조가 親撰한 『醫藥論』을 주해하여 인쇄 반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사람 모두 의약과 서적 편찬에 밝고 선대부터 활동한 인물들이라 선왕인 세종의 유업을 계승하여 의방유취를 교정하는데 책임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 세조 4년(1458) 4월 6일 :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조에 찬술한 『醫方類抄』²⁴⁾는 여러 가지 처방이 갖추어

24) 『왕조실록』에는 ‘醫方類抄’, ‘醫書類聚’라는 다른 이름이 보인다. 단순히 필사자의 오류로 여기는 견해도 있으나 전자는 세종조 초판본이 여전히 抄寫의 상태로 남아 있음을

실려 있지만, 卷秩이 너무 많아 갑자기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簡要한 方書를 가지고 分門講習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⁵⁾

* 세조5년(1459) 9월 1일 :

御書로 左承旨 李克堉에게 유시하기를, “『治平要覽』과 『醫方類聚』는 모두 세종 때에 찬집한 책으로 인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치평요람』은 다시 校閱해 보니 그릇된 곳이 많이 있지만, 『의방유취』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릇된 곳이 많지 않고 또한 日用에 간절하기가 『치평요람』의 미칠 바가 아니므로, 나는 『의방유취』를 먼저 교정하여 인출하고, 『치평요람』은 천천히 다시 교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²⁶⁾

앞의 첫 기사에서 의방유취가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교정을 거듭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당초의 목적 중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의서의 수요가 가장 시급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사에서 『治平要覽』보다 우선하여 교정을 지시하는 세조의 의방유취에 대한 애착과 간행 의지가 엿보인다. 치평요람은 수십 명의 집현전 학사들이 5년이나 걸려 완성한 정치귀감서이며, 이 역시 당시로선 대단히 큰 사업이었다.²⁷⁾

* 세조5년(1459) 9월 4일 :

左承旨 李克堉이 上書하기를, “신이 삼가 御書를 받들어 반복하여 생각해 보건대, ……『醫方類聚』도 또한 醫書의 大全이므로 日用에 緊切한 것은 진실로 『治平要覽』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斤兩의 多少와 藥性의 寒溫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校正하는 일은 마땅히 갑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증해 주는 것이다. 후자는 범례에서 ‘諸方’이 처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方書의 약어로 쓰인 용례를 근거로 동일한 의미의 異稱으로 보아 무방하다.

25) 『世祖實錄』(3) 「第1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290. (“癸亥……禮曹啓: ‘世宗大王朝所撰『醫方類抄』, 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 分門講習.’, 從之.”: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2」, 65.)

26)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346-347. (“九月庚辰……御書示左承旨李克堉曰: ‘治平要覽』, 『醫方類聚』 皆世宗時撰集之書, 不可不印. 然『治平』更校之, 則誤處多, 若『類聚』則不必如是之多誤矣. 且切用非『治平』之所及, 予欲先校『類聚』印出, 『治平』則徐徐更校如何?……’: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75.)

27) 150권이나 되는 이 대형서는 中宗11년(1516)에야 간행되었다.

리나 그 교정을 儒士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의서를 習讀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文理를 통달하여 方書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하고, 원컨대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근일에 『兵要』를 교정하는 예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檢察하도록 해서 상벌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書局을 세우고 별도로 廩祿을 주어 먹도록 하지 않더라도 일은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다. ……” 하였다.²⁸⁾

* 세조5년(1459) 11월 30일 :

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²⁹⁾

위의 두 기록을 통해 세조의 교정작업이 의서 습득 과정을 통해 의학을 숙지한 의학습득관에 의해 주도되고 그 책임자로서 양성지가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기록 중 앞의 것은 이미 세종대에 비하여 의학교육과 의서편찬을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방유취 편찬 직전인 1440-1445년간의 의약관련 실록기사에는 궁중 내 잇따른 藥禍 사고, 의학교육의 전습이 되지 않는다는 국왕의 지적과 습득교수 인원이 마땅치 않았던 점, 해마다 계속되는 돌림병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점, 이러한 문제시에 근거할 방서가 부재한 점이 지적되는 상황이었다.³⁰⁾

따라서 조선왕조 초기 각 분야에서의 인재양성과 함께 의방유취 편찬을 계기로 10여년 만에 많은 의학인재가 양성되고 여러 의경방서가 구비되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것은 방대한 편찬과정을 통하여 인인전수의 경험의학에서 탈피, 체계적인 전문의학 교육을 통해 이론화된 신진의학설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28)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347-348. (“九月……癸未……左承旨李克堉上書曰: ‘臣伏承御書, 反覆尋思, ……『醫方類聚』, 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治平』之所及也. 然以斤兩之多少, 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 不可容易, 然其校正不必儒士. 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 可令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 監領如近日『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 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 別廩飲啖, 而功亦易就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75.)

29) 『世祖實錄』(5) 「第18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38. (“戊申……命行大護軍梁誠之, 校正『醫方類聚』.”: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8」, 8.)

30) 이 시기 이전 盧重禮, 全循義 등 몇몇을 제외하곤 경험과 의학지식을 겸비한 마땅한 의학교수 인원이 부재하였으며, 이미 연로한 소수의 인원이 중책을 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왕조실록 1440년 6월 25일조 세종의 노중례에게 의학교수 지시 기사 및 1445년 4월 11일, 5월 22일, 10월 21일조 기사 참조.

* 세조10년(1464) 1월 11일 :

吏曹에 전지하여 孫昭 등 10인을 罷職시키고, 柳瑤 등 7인을 파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削除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의방유취』를 교정함에 있어서 많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³¹⁾

사실 이 기록은 의방유취 편찬 과정에서 가장 파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무려 74인에 달하는 사람이 무더기로 징계된다. 이들의 실명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으나 의서습독관과 의원 등의 교정실무자일 것이며 이 정도의 인원이면 교정자 대부분이 교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다 앞서 서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교정착오와 관련하여 시사성 있는 기록이 있다.

* 세조9년(1463) 9월 5일:

임금이 梁誠之에게 말하기를, “書冊을 상고하고 교정하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의 서적이 흩어져 찾아보기 어려우니 지금 정돈해서 간직하여 考閱에 對備토록 하라.” 하였다.³²⁾

* 세조10년 5월 30일 :

임금이 忠順堂에 나아가서 吏曹·兵曹를 불러서 注擬³³⁾를 하도록 하여, 梁誠之를 吏曹判書로, 韓繼美를 西原君으로, 崔永潏을 行司憲 掌令으로 삼고, 『武經』을 註釋하고 『醫書類聚』를 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資級을 올렸는데, 堂上官은 아들·사위·아우·조카에게 대신 加資하였다.³⁴⁾

31) 『世祖實錄』(8) 「第3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98-99. (“甲子……傳于吏曹, 孫昭等十人罷職, 柳瑤等七人罷職, 仍削前仕,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仕,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 以校正『醫方類聚』多致錯誤故也.”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2」, 20-21.)

32) 『世祖實錄』(7) 「第3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316-318. (“戊午……上問(梁)誠之曰: ‘書冊考校幾何?’ 誠之曰: ‘已畢.’ 上曰: ‘在世宗朝書籍散亂, 今雖(須)整齊藏之, 以備考閱!’……”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7」, 72)

33) 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文官은 吏曹, 武官은 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고법전용어집』, 법제처).

34) 『世祖實錄』(8) 「第34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334-335. (“戊午. 御忠順堂, 召吏·兵曹, 令注擬, 以梁誠之爲吏曹判書, 韓繼美西原君, 崔永潏行司憲掌令, 註『武經』及撰『醫書類聚』人並加一資, 堂上官代加子·壻·弟·姪.”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4」, 72.)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의방유취의 완결이 아니었으며, 교정 작업 완료 후에도 의서의 분류편집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상 3년이 지난 시점의 다음 두 기사를 보도록 하자.

* 세조12년 10월 02일 :

이날에 申叔舟·崔恒·姜希孟·梁誠之·丘從直·任元濬·成任·徐居正·李坡·李芮·金石梯·鄭沈 등에게 명하여 각기 郎廳 1인을 거느리고 諸書의 類聚를 揀選하도록 하였으니, 易·天文·地理·醫·卜筮·詩文·書法·律呂·農桑·畜牧·譯語·算法이다.³⁵⁾

* 세조12년 10월 24일 :

申叔舟·崔恒·徐居正·姜希孟·任元濬·成任·梁誠之·李芮·李坡·金石梯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諸書의 類聚를 써서 바치도록 하고,³⁶⁾

위의 두 기록은 시점이나 기사내용으로 보아 의방유취 교정작업과 연속된 것 같지 않다. 또 같은 달의 다음 기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명령이 거의 동일 인물에게 시달된 점으로 보아 같은 맥락에서 거둬진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전기 의방유취와 같은 대형 방서의 편찬을 계기로 문신·의관·의서습독관 등이 의서습독 과정을 통해 선진 의학설을 도입·정리하고 교육과 인재배양, 필수 의서의 편찬 등 다양한 의학사업이 추진되었고 의학외적인 제도정비와 맞물려 점차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정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세조대 의방유취 교정 과정을 시기별로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05년 11월 - 09년 09월(1459-1463) : 1차 교정기. 세조의 교정 의지 피력.

35) 『世祖實錄』(10) 「第4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5-6. (“庚子……是日, 命申叔舟·崔恒·姜希孟·梁誠之·丘從直·任元濬·成任·徐居正·李坡·李芮·金石梯·鄭沈等, 各率郎廳一人, 揀選諸書類聚, 曰易·曰天文·曰地理·曰醫·曰卜筮·曰詩文·曰書法·曰律呂·曰農桑·曰畜牧·曰譯語·曰算法.”: 『世祖惠莊大王實錄』 「卷40」, 1)

36) 『世祖實錄』(10) 「第4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18 (“壬戌……又召申叔舟·崔恒·徐居正·姜希孟·任元濬·成任·梁誠之·李芮·李坡·金石梯, 令書諸書類聚以進……”: 『世祖惠莊大王實錄』 「卷40」, 4)

09년 10월 - 10년 01월(1463-1464) : 纂註, 세조의 검토와 교정자 교체.
10년 01월 - 10년 09월(1464) : 2차 교정기. 세조의 재신임. 교정완료.
* - 12년 10월 - : 諸書類聚(醫書類聚) 지속 기록

5년의 기간이 교정에 소요되었으며, 이 시기의 교정작업은 주로 인용서간의 중복된 처방을 취합하여 축약시키는 과정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편찬시기로 보아 의방유취 세종조 초판본을 모태로 재편된 것이 분명한 창진집과 교정을 거친 현존 성종조 초간본간의 대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체계상 재분류된 점을 감안하고 창진집 보다 추가된 내용은 주로 인용서 중에서 비교적 후대 의서의 대조 결과를 취합하여 주석 처리한 부분들이다. 자세한 정황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창진집 편찬에 관한 논의에서 상론기로 한다.

이 외에도 단적인 예로서 御醫撮要方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향약집성방 12방, 의방유취에서 71조의 처방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³⁷⁾ 향약집성방의 인용방은 조사결과와 부합되었으나 실전의서의 복원 연구에서 의방유취 내 御醫撮要方을 채록한 결과 모두 128방의 인용방이 수집되었다. 이중 각 病證門의 어의촬요 본편에서 수록된 것이 90방, 나머지 38방은 앞선 시기 다른 인용 의서의 유사처방에 취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조사가 부정확한 것을 닦아기 이전에, 전체 인용처방 중 3분의 1 가량이 타 방서의 처방과 대조하여 수합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묘하게도 어의촬요 처방의 취합비율(33.7%)은 초판시의 365권에서 266권으로 간행된 의방유취 전체분량의 축약률(36.8%)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의방유취의 초판에서부터 교정에 이르는 과정이 방대한 의학지식의 정리와 함께 압축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라고 말한다면 창진집·구급방 등 2차 의서의 출간은 압축된 지식정보를 현실에 구현하는 파생효과로서 확대 재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

1.3 成宗朝 初刊本 醫方類聚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조조에 시행된 교정작업의 완료 후에도 다양한 의서의 類抄작업은 의서 습독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역시 간행 완료시점인 1477년의 기사에서 3년의 印行기간을 빼더라도 10여 년의 시간에 공백이 생긴다. 물론 곧바로 간행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사소한 궁금증을 접어둔다면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37) 김두중, 최수환 등의 연구.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얼마나 추가되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록 방대한 분량이긴 하나 크게 보아 1차 편찬에 3년, 2차에 걸친 교정에 5년, 간행에 3년이 소요되었으므로 시간상으로는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의방유취를 모태로 조선 의서가 편찬되고 諸書類抄 작업이 지속된 걸로 보아 일정 부분 새로운 내용의 추가나 간행을 위한 마무리 교정이 다시 이루어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의방유취 교정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부었던 세조 당대에는 간행되지 못하였고 세조 원년에 왕명으로 개주한 乙亥活字로 손자인 성종 임금에 의해 인출된다. 세종25년(1443)의 편찬 시작 시점으로부터 성종8년(1477) 초간본이 인출되는 시점까지 총 소요기간 5대 34년에 걸친 대역사를 마무리짓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0여 년간의 공백을 넘어서 성종대의 방유취가 인출되어 빛을 보게 되는 정치적 상황이다. 세조 사후 등극한 예종은 모후인 정희왕후의 섭정하에 왕권강화를 모색하다 1년만에 요절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뒤를 이어 세조의 유명에 따라 왕위를 계승한 성종은 불과 13살의 어린 나이로, 할머니인 세조비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진다. 수렴청정은 성종 6년(1475)까지 계속되었으며 1476년 한명회의 해직과 훈구대신들의 퇴조로 왕권이 신장되기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³⁸⁾ 의방유취의 판각과 간행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전 생애에 걸쳐 의방유취의 편찬에 관여한 세조의 유지가 성종의 국가제도 완비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성종8년(1477) 5월 20일 :

西平君 韓繼禧·左參贊 任元濬·行護軍 權攢이 『醫書類聚』 30帙을 印行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이 책을 찍어내는 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監印官 柳潛는 오래 醫官으로 滯留되었고, 白受禧는 典校署 別提로 이미 考滿³⁹⁾이 되었으니, 淸컨대, 유서는 높은 벼슬을 제수하고, 백수희는 祿職⁴⁰⁾을 주소서.”⁴¹⁾

3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2)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5. pp.134-137. 참조.

39) 考滿 : 벼슬아치의 임기가 꼭 참(『한국한자어사전』, 단국대동양학연구소, p.864.).

40) 有祿官과 無祿官을 말하는데 모두 실직에 속한다. 유록관은 정식 녹봉을 받으며 겸직이 아닌 고유업무가 있는데 반해, 무록관은 녹을 받지 않으며 국고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조 이후 성종연간에 경관직과 외관직에 광범하게 존재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1) 『성종실록』(10) 『第8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273-274. (“丙戌……西平君 韓繼禧·左參贊任元濬·行護軍權攢印進『醫書類聚』三十帙, 啓曰: ‘此書印出, 至三年功訖, 其

위의 기사에서 발행 부수는 30질로 명시되어 있지만 총 권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간행시점의 포상결과로 보아 교정의 주역들과는 다소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 또한 세조 당대 국왕의 신임을 받으며 습독에 참여한 인물들로 편찬 및 교정과정에서 배양된 의학인재와 축적된 경험이 간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세종으로부터 문종, 세조, 성종에 이르는 역대 의방유취 편찬과정과 관련한 왕조실록의 기사를 검토하여 진행한 논리 전개를 바탕으로 의방유취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종류의 異本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의방유취 편찬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의방유취 편찬 과정 개요

조대	기간	주요 편찬인물	경과	비고
세종	1443	金禮蒙, 柳誠源, 閔普和 등 (集賢殿學士)	世宗命撰 '哀集諸方, 分門類聚'	1차 草稿本 (왕세자 문종 섭정기)
	-	金汶, 辛碩祖, 李芮, 金守溫(文官) 全循義, 崔閔, 金有智(醫官)	편집	
	1445	安平大君 瑠, 李思哲, 李師純, 盧重禮(監修)	365권 완성, 世宗賜名	
	1445-1451	?(集賢殿, 承文院, 內醫院)	書寫, 文宗 散官職 除授 취소	
세조		梁誠之에게 校正을 명함.	5년11월-9년9월: 1차교정기	2차 校正本 (세조10년: 醫書類聚)
	1459	孫昭, 柳瑤, 韓致良, 安克祥 등 과직	9년10월-10년1월: 세조의 검토와 교정자 교체.	
	1464	韓繼美, 崔永潁 등 교정 완료 포상	10년 1월 - 10년 9월: 2차 교정기. 세조의 재신임.	
		醫書習讀官	12년 10월 - : 제서유취	
성종	1475-1477	韓繼禧 · 任元濬 · 權攢 · 柳湑 (監印官) 白受禧(典校署 別提)	30질(266권 264책)을 乙亥活字로 간행	3차 初刊本 (세조비 정희왕후 수렴청정기)

監印官柳湑久滯醫官, 白受禧以典校署別提已考滿, 請授湑顯官, 受禧祿職.' ……': 『成宗大王實錄』 「卷80」, 61.)

2. 전문의서의 출판

2.1 세종의 의방유취 편찬과 구급의서 간행

세종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의서가 출판된 기록은 보이나 의방유취와 연계하여 편찬된 서적은 현재 확실한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 논급하기 곤란하다. 다만 구급방과 창진집의 간행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구급방만 해도 세종대 구급방, 세조대의 구급방(언해), 허준의 언해구급방 등의 간행사실이 전해지는데, 여러 가지 異本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된 한글학회 영인 蓬左文庫본은 한글표기나 편찬방식, 활자모양 등을 감안할 때 세조대 편찬된 것이 확실하다.

후대 허준의 언해본과는 차서나 인용서 등 여러 면에서 계열성이 다르며, 아마도 세종대 구급방은 향약집성방의 편찬을 전후로 간행되었을 것이며, 한글학회본 역시 창진집과 마찬가지로 의방유취 초판 이후 늦어도 세조대 교정시기에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세조12년 6월 救急方 각 2건을 八道에 印頒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시기는 간행 이전의 교정기에 해당한다. 또 현전 구급방을 살펴보면 의방유취의 골자를 발췌하고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향약방 등 조선의 고유 향약의서가 골고루 채록된 점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다. 또 36조의 분류체계가 향약집성방과는 사뭇 다르고 인용내용도 많은 차이가 있어 향약집성방을 모태로 편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攷事撮要』에도 世祖命撰에 淸州, 平壤板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언해본 구급방은 세조12년경 이루어진 醫書를 類抄하는 작업의 소산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의방유취 편찬 이후의 성과가 담긴 것으로 보아 세종대의 구급방은 초판 이전의 것으로 언해본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2.2 세조의 의방유취 교정과 의서 편찬

2.2.1 瘡疹集

의방유취의 편찬과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창진집이다. 이 책은 그간 국내에 실물이 전하지 않고 기록만 남아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에 초본이 소장된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⁴²⁾ 근래 중국 浙江省 도서관에서 完本이

42) 『朝鮮王朝實錄』과 『經國大典』에 창진집이 習讀醫書와 醫學取才考講書로 올라 있으며, 金安國의 『五倫行實圖』 서문에 세종조의 『瘡疹方』과 金安國이 이 책을 중간했다는 사실이 전한다. 하지만 尹光顏의 『痘科彙編』 서문(1630년)에 이들 모두가 이미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中醫圖書聯合目錄』에 撰者 佚名의 瘡疹集 抄本이 상해

발견되었고, 그 전모가 국내에 소개됨에 따라 의방유취 편찬을 즈음한 의서간행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었다.⁴³⁾

이에 따라 任元濬·李克堪이 세종조에 편찬한 『瘡疹方(集)』을 刪定하여 세조3년(1457)⁴⁴⁾에 편찬한 이 책이 의방유취 초판 이후 세조조 교정 이전의 시기에 편찬된 의서로서 의방유취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한 셈이다.

【瘡疹集序】

……世宗太王……命內醫，搜摭諸方，凡屬瘡疹者，合爲一帙，名曰瘡疹集，印頒中外，顧其書猶頗闕誤。我殿下特留宸慮，清讌之閒，取閱此書，而病其未備，遂命臣元濬及吏曹參議臣李克堪，俾之刪定，遇有難會，略爲附註。始自發出，至于滅癥，凡爲劑有九，爲卷三，方論藥證，無不具載，而其規模節目，悉稟睿裁，又命僉知中樞臣李禮孫，就加讎校，書成，命臣序之……

天順元年蒼龍丁丑四月下澣，朝散大夫守直藝文館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
臣任元濬，拜手稽首謹序⁴⁵⁾

위의 서문에 의해 이미 세종대에 창진집의 모본이 있었으며, 세조3년(1457년) 왕명으로 임원준과 이극감(刪定)·이예손(讎校) 등이 재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편 내용은 刪定·註釋, 그리고 3권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창진을 크게 9체로 구분하여 論證施治를 서술한 것이다. 재편된 창진집 3권은 상·중·하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의방유취와의 비교 결과 小兒 疹痘門의 내용과 대비된다. 좀 더 세분하여 대비하면, 의방유취 권263의 疹痘1에서부터 권264 疹痘2의 전반부 성혜방에서 처방이 시작하기 전의 논설부까지가 창진집 권상의 「諸家論」과 대동소이하다. 이하 권265의 疹痘3 疹痘禁忌까지의 처방 내용이 창진집에서는 권중과 권하의 아홉 가지 치료단계별로 분류되어 재편된 것이다.

중의학원도서관에 소장된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또 일본에서는 『聿修堂架藏醫書目』에 '瘡疹集抄, 朝鮮本, 朝鮮任元濬奉教撰'으로 되어있고, 1972년 고서경매회에 典醫監의 官印이 찍혀 있는 刊本이 나타났으나 首尾가 떨어져 나간 改裝本으로 간행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三木榮, 『朝鮮醫書誌』, pp.56-57.).

43) 국내에는 일간지를 통해 이 책이 두창 등 방역전문치료서가 아닌 피부질환 책으로 보도되었다(허의도, 「535년 전 펴낸 국내 첫 피부병책 '창진집' 중국에 있다」. 중앙일보: 1997.10.15일자.).

44) 瘡疹集의 간행시기에 있어서 三木榮의 세조6년(1460) 무렵이라는 추정을 따른 적이 있으나 이제 실물의 발견에 따라 서문에 의거 1457년으로 정정함.

45) 李佑成 編. 『瘡疹集』(栖碧外史海外蒐佚本 제78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p.3-7.

이에 비하여 鄉藥集成方의 창진편은 권69 안에 小兒疹痘瘡, 小兒斑瘡, 小兒疹痘瘡減癩 셋 뿐으로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소략하다. 창진집의 서문에 세종대의 창진집이 오류와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의 초판 창진집은 이에 비해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론은 향약집성방→세종대 창진집, 의방유취→세조대 재판 창진집의 등식 아래 가능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구도 아래 의방유취 초판본과 창진집, 교정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창진집이 시기적으로 초판본을 분류, 재해석하여 교정과 주석작업을 거친 것은 확실하나 최소한 소아 진두문 즉, 창진에 대한 부분만큼은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 즉 세조대의 교정작업이 단순히 글자 교정이상이 아니라면 몰라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100여 권의 분량이 산삭되었을까? 세조대 5년여에 걸친 교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향약집성방과의 중복부나 인용서간의 중복된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2.2 醫藥論 殘存.

世祖가 親撰하고 任元濬이 註解하였다는 의약론은 왕조실록에 그 일부만이 전해 지는데 전서의 내용을 알 길이 없으나 의방유취 교정이 진행 중이던 세조9년(1463)에 인출되어 서로 상관성이 인정된다.

* 세조9년(1463) 12월 27일 :

임금이 『醫藥論』을 지어서 韓繼禧·盧思愼과 兒宗⁴⁶⁾ 등에게 보이고, 任元濬에게 명하여 註解를 내어서 인쇄 頒布하게 하였다. 그 논에 이르기를, “무릇 병을 치료하고 약을 사용하여, 길흉을 바꾸고, 조화를 부리고, 禍福을 정하는 것은 다만 그 차고 더운 것을 分辨하여 처방 치료하는 데 있을 따름이요, 그 盛하고 衰함을 틈타서 일찍 도모하는 데 있을 따름이니, 8種의 醫員도 그것을 엿보지는 못할 것이다. …… 무엇을 8종의 醫員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가 心醫요, 둘째가 食醫요, 셋째가 藥醫요, 넷째가 昏醫요, 다섯째가 狂醫요, 여섯째가 妄醫요, 일곱째가 詐醫요, 여덟째가 殺醫이다. …… 또 무심한 의원이 있으니, 마음은 생이

46) 兒宗 : 세조 때 闕內에 들어가 侍衛하던 宗室의 나이 어린 子姪을 말한다(『한국한자어사전』 권1, p.39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永順君溥·龜城君浚·銀山副正徹·河城尉鄭顯朝 등이 매번 두 사람씩 돌아가며 入直하였는데, 임금이 이들을 아중이라 불렀다(『세조실록』32, 10년 정월갑인).

되나 근본은 생이 없는 것이다. 생이 없다면 병도 없을 것이요, 병이 없다면 의술도 없을 것이요, 의술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⁴⁷⁾

세조가 친찬한 이 의약론은 의방유취와 직접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교정의 막바지에 해당한다. 특히 세조10년 1월의 교정진에 대한 대규모 문책인사가 있기 직전이어서 세조가 당시 조선의 의료현실에 자못 회의적인 심경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이 일부 내용 외에는 모두 실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상고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기사에 등장하는 任元濬과 韓繼禧는 모두 세조조 의방유취 교정작업과 성종조 의방유취 초간본 간행의 주역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결국 성종조 간행에 이르기까지 세조의 遺志를 이어받든 이들 훈신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⁴⁸⁾

또 이렇듯 醫藥論을 지어 자신의 의학관을 피력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세조이기에 자신의 치세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의방유취의 교정 및 의서습득 과정이 지속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2.3. 성종의 의방유취 간행과 2차 의서 편찬

2.3.1 救急簡易方

성종대의 의서 출판은 許琮에 의해 주도된다. 성종의 당대에 의방유취가 초간되었지만 곧이어 인출의 부적합을 이유로 역시 새로운 의서의 편찬이 속출하게 된다. 먼저 성종20년(1489)에 구급방을 보완한 『救急簡易方』 8권이 尹壕, 任元濬, 朴安性, 權健, 許琮 등에 의해 편찬된다. 이것은 역시 의방유취 성종조 초간본을 토대로 한 응급질환 전문의서의 확충과정으로 보인다.

47) 『世祖實錄』(8) 「第31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89-91 (“辛亥……上製醫藥論, 以示韓繼禧·盧思慎及兒宗等, 命任元濬, 出註印頒. 論曰: ‘夫治病用藥, 變吉凶, 弄造化, 定禍福, 只在卞寒熱對治而已, 乘盛衰早圖而已. 八種之醫所莫窺也. ……何謂八種之醫? 一者心醫, 二者食醫, 三者藥醫, 四者昏醫, 五者狂醫, 六者妄醫, 七者詐醫, 八者殺醫. ……又有無心之醫者, 心爲生, 本無生, 無生無病, 無病無醫, 無醫無事.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1」, p.18)

48) 의약론 관련한 것 이외에도 이들은 늘 세조 곁에서 近侍하며 어약의 議藥에 참여하였다. 다음과 같은 실록의 기사가 이런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世祖實錄』(10) 「第4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5-6. (“庚子…… ○上召韓繼禧·任元濬·金尙珍, 曰: ‘夢予意食玄胡索則病愈, 服之, 果胸腹之證少減, 此何藥耶?’ 繼禧對曰: ‘玄胡索者, 治胸腹痛之藥也.’ 乃進加玄胡索七氣湯, 果平愈. ……○自上之不豫, 韓繼禧·盧思慎·姜希孟·任元濬·金尙珍, 每日入(入)宿侍疾.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40」, 1)

【救急簡易方序】

……醫方類聚, 既集醫家之大成, 其刪煩舉要者, 則先有曰鄉藥濟生方·曰救急方, 而或取舍未精, 詳略失當, 皆不適於中 …… 命領敦寧府事臣尹壕·西河君臣任元濬·工曹參判臣朴安性·漢城府左尹臣權健暨臣琮, 率其僚屬, 搜括古方, 病取其要, 而以急爲先; 藥收其寡, 而以易爲務. 其所裁定, 實稟神規, 擇之必精, 簡而不略. 又翻以方言, 使人易曉, 書成, 凡爲卷八, 爲門一百二十七, 命曰救急簡易方, 仍令臣序之.……

弘治二年己酉九月上澣

精忠出氣布義敵愾純誠佐理功臣崇祿大夫行兵曹判書陽川君臣許琮敬序⁴⁹⁾

2.3.2 醫門精要

이러 의방유취 초간본을 다시 1/5로 축약한 『醫門精要』가 성종24년(1493)부터 許琮에 의해 편찬된다. 허종이 완성치 못하고 權健, 金諶의 교정을 거쳐 연산군10년(1504)에야 50권으로 간행되었던 이 책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 규모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서문을 통해 살펴보면, 대폭적으로 분량을 축소시켜 인쇄의 용이함과 열람의 편이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내용의 축약에도 불구하고 91문의 의방유취에 비하여 87문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의방유취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원서의 규모를 전해주는 유일한 기록으로 申用漑의 『二樂亭集』에 실려 있는 『의문정요』의 跋文을 통해 그 개략을 알아보기로 하자.⁵⁰⁾

【醫門精要跋】

『의문정요』는 원래 『의방유취』를 간략하게 편찬한 것이다. 의방유취는 266권으로 세종대왕께서 찬집을 시작하신 후 세조를 거쳐 성종 임금대에 와서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의서를 수집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이론과 다양한 治證·처방을 갖추어 집대성한 것으로서 실로 의가의 指南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권수는 너무 많고 인출한 부수가 많지 않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책이 되었으며, 의원들조차도 훤히 알기 힘든 것이 흠이다. …… 이에 弘治 6년 癸丑(1493, 성종24년)에 內醫院 都提調 許琮에게 번잡한 내용을 없애고 간략하게 요점을 추려 인쇄하기 용이하고 의술을 익히기에도 편리한 책으로 꾸미라고 명

49) 동양학연구소 편. 『救急簡易方諺解』. 서울:단국대학교출판부, 1982. pp.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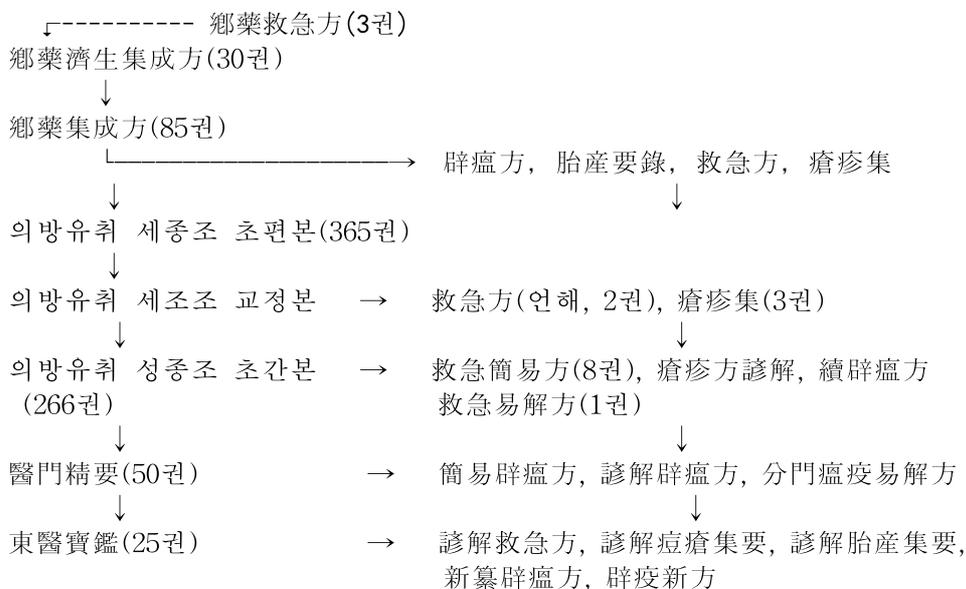
50) 金然의 『海東文獻總錄』에도 의문정요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 발문의 내용을 초록한 것임.

하셨다. 더하고 뺄 것과 간략하고 번잡한 것을 親裁하시고 나서 『醫門精要』라는 서명을 하사하셨다.

편집이 다 끝나기도 전에 허종이 사망하니 다시 병조참판 권건과 이조참의 김심에게 명하여 자세히 교정을 보도록 하였으나 미처 일이 완성되기 전에 성종이 승하하시어 몇 년째 교정이 중단되었다. 주상 진하(燕山君)께서 부왕(成宗)의 遺志를 받들어 내의원에서 교정을 하도록 명하고 50권으로 묶어 87문으로 나누게 하시는 한편 나(신용개)에게 발문을 짓도록 명하셨다. ……51)

의방유취의 편찬을 전후로 기록에 전하는 조선 전기 의서의 간행을 종합의서와 전문의서로 나누어 시기별로 대비하고 편찬과 관련한 영향성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연쇄적인 확충구조로 표시할 수 있다.

표 2 : 종합의서의 편찬과 전문의서의 출판



51) “右『醫門精要』者，原『醫方類聚』，而刪繁就簡者也。類聚書凡二百六十六卷，我世宗大王，始開纂輯，歷世祖·成宗數聖而書成。備集群方，該論衆證，實醫家之鉅海指南也。然帙多印少，中外罕觀，爲醫者亦病於貫穿 …… 乃於弘治六年之癸丑，命內醫院都提調臣許琮，芟其繁而精要之，令簡而易印，約而易習。其增削簡繁，摠自睿裁，賜方名『醫門精要』。編才訖而琮逝，更命兵曹參判臣權健，吏曹參議臣金諶。詳加讎校，未底于成，而成宗陟遐，停校有年。我主上殿下，遙追先志，遂命內醫院，校定其編爲五十卷，分門爲八十有七，仍命臣用爲跋。 ……(申用漑. 『二樂亭集』권8. 「醫門精要跋」)

이상 조선 전기 의서 출판 과정을 개략하면 종합의서의 간행을 전후로 구급·胎産 등의 응급의학서와 癩疫·瘡疹 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전문서가 편찬된 사실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바꿔 말해 조선전기 의학은 전래 고유경험의학의 수합→중국 신의학의 융합→체계적인 흡수·분류과정을 통해 2차적으로 일반인의 실용에 우선되는 응급의학 및 방역전문서가 발췌·출판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의방유취의 초판·교정·간행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 의학서와 의방유취로부터 2차 출판되는 전문의서의 편찬사항을 알기 쉽게 도표화하였다. 3종의 의방유취 이본을 중심으로 좌측은 영향을 미친 의서 혹은 인용의서이고 우측은 의방유취를 모태로 2차 편찬되는 전문의서로서 실선은 직접 인용, 점선은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세종조 초고본으로부터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는 시대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직접 인용 혹은 모본관계가 있으나 동의보감 이후는 재인용이라서 병렬하여 제시하였을 뿐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각 의서의 편찬시기 혹은 간행시기는 표4에서 별도 정리하였고, 표3에서는 대체적인 시기만을 세기 단위로 약식 표기하였다.

표 3 : 의방유취 조선판본의 전승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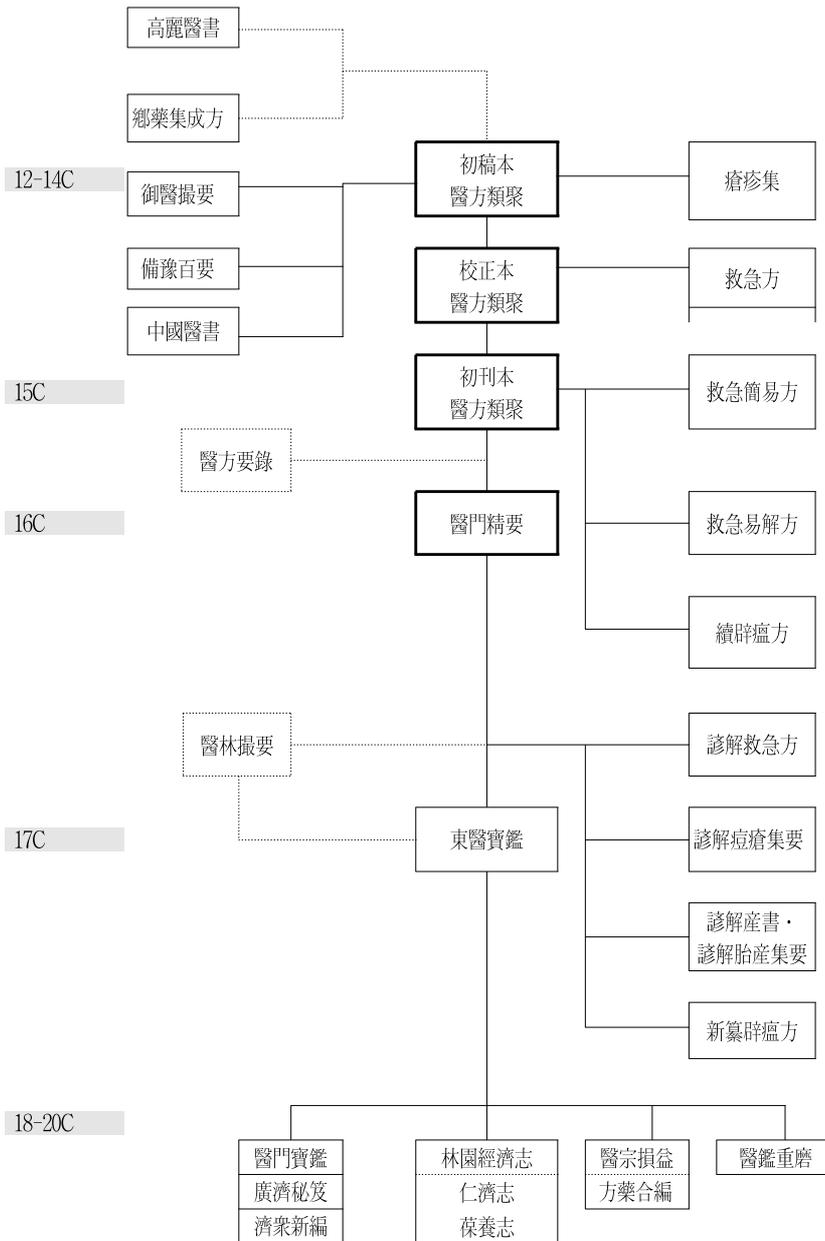


표 4 : 의방유취 조선판본과 2차 의서 출판

版本/2次醫書	編纂/刊行時期	主要 編纂人物	編制	書誌事項	典據
1.世宗草稿本 醫方類聚	1443-1445	金禮蒙, 全循義, 盧重禮 等	365卷	草稿本? 世宗 醫方類聚 賜名	失傳, 世宗實錄 卷 110.
救急方	世宗年間 (1419-1450)	?	?	木版 1冊(零本)	서울大 奎章閣 所藏
瘡疹集	世宗年間 (1441-1450)	?	?	瘡疹方	失傳, 瘡疹集 序文
辟瘟方	世宗年間	?	?	?	失傳, 中宗實錄
2.世祖校正本 醫方類聚	世祖5年(1459) -世祖10年(1464)	梁誠之, 李克堪, 任元濬 等	266卷264冊 92門	校正本? 醫方類抄, 醫書類聚	失傳, 世祖實錄卷 12,17,18,31,32, 34
瘡疹集	世祖3年(1457)	任元濬, 李克堪 刪定	3卷	附: 本朝經驗	失傳→最近 發見
醫藥論	世祖9年(1463)	世祖 親撰 任元濬 出註印頒	?	?	世祖實錄(卷31) 殘 存
救急方(診解)	世祖年間 (世祖12年頃 推定)	?	上下2卷2冊	乙亥字 混用, 木板 本	日本 名古屋 蓬左 文庫 所藏
3.成宗初刊本 醫方類聚	1474-1476彫成 成宗8年(1477)印出	韓繼禧, 任元濬, 權攢 等	266卷264冊 92門	乙亥字 推定 醫書類聚	日本 宮內廳 書陵 部 圖書寮 所藏
救急簡易方	成宗20年(1489)	尹壕, 任元濬, 許琮, 朴安性, 權健 等	8卷127門(許 琮 序) 9卷9冊	新纂救急簡易方, 救急簡易方診解	殘存
救急易解方	燕山君4年(1498) 1499年 印出	尹弼商, 洪貴達, 金興壽, 鄭眉壽 等	1卷1冊	燕山君 救急易解方 賜名, 洪貴達 序, 權 健 跋 等	現存
續辟瘟方	中宗20年(1525)	?	1冊?	簡易辟瘟方?	失傳, 中宗實錄, 卷 32, 52
4.醫門精要	成宗24年-(1493-)	許琮(1次編輯後 1494 死亡)	50卷87門	成宗 醫門精要 賜名	失傳
	燕山君10年(1504) 刊行	權健, 金諶 內醫院(校正)	?50卷87門	許琮 跋文	二樂亭集 卷8 肅宗 8年(1682), 海東文獻總錄

의방유취의 편찬과 조선 전기 의서에 대한 고찰에서 조선의 의방유취 편찬과정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전문의서의 출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서지학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의방유취 편찬 관련 기사와 書目類 및 조선전기의 관련 의학문헌을 고찰한 결과 세종대에 初編된 의방유취(1443-1445년, 草稿本)는 교정의 미비와 365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세조대 교

정과정(1459-1464년, 校正本)을 거쳐 성종대(1474-1477년, 初刊本)에 이르러 3년여에 걸친 판각작업 끝에 비로소 간행된다. 이 과정에서 266권 264책으로 내용이 집약되어 정제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분량으로 인해 소량만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의방유취의 편찬과정에는 대량의 방대한 의학자료와 선진의학서가 소요되었으며, 구급과 전염성 질환에 대한 시급한 실용 의서가 육속 편찬되었다. 조선 전기 의학은 의방유취와 같은 거대 의학서의 편찬 및 교정, 간행 과정을 거듭하면서 가시적 정보자원을 비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救急方』, 『瘡疹集』,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續辟瘟方』 등 조선전기의 많은 의서가 의방유취의 편찬을 전후로 하여 간행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조대 간행된 『救急方(언해)』과 근년에 중국 절강성 도서관에서 발견된 『瘡疹集』은 의방유취의 해당 부분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어 의방유취의 편찬과 교정 과정을 밝혀주는 단서를 지니고 있다. 또 『瘡疹集』에 나타나는 任元濬의 註釋은 당시 조선 의가의 의론 해석과 수입된 중국의학을 수용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임원준의 창진집은 단순 방역서의 간행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의방유취 편찬사업을 통해 조선 의학 초기의 이론과 실제 치료가 겸비된 독자적인 전문의서가 나오게 되는 轉機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의방유취 편찬을 전후로 진행된 다수의 전문의서 출판 및 이에 수반된 의서습독과 의학인재 양성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진행된 醫書 習讀 및 類抄작업은 상호 되먹임 관계를 형성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축적된 소양과 지식은 時用 醫書의 간행을 통해 다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어문, 사회, 지리, 제도,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 적용된 ‘諸書類聚’ 과정과 수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선 전기 의학은 이러한 확대 재생산 구조 하에서 대량의 선진의학 지식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